



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915호 2023. 6. 7.(수)



선	기관의 장
결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68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71호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2023-72호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5
거창군 고시 제2023-73호	도로명주소 고시 1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963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2
거창군 공고 제2023-965호	주상 완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5
거창군 공고 제2023-966호	고제 원농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9
거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7호	2023년도 거창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3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3-68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8호, 2023. 3. 9.)되어,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거창군수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
주거 지역	소계	4,873,879	-	4,873,879	0.6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43	-	3,121,743	0.3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0.02	-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
상업 지역	소계	347,740	-	347,740	0.04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 지역	소계	1,575,167	-	1,575,167	0.20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1,546,725	-	1,546,725	0.19	-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
녹지 지역	소계	25,413,400	-	25,413,400	3.16	-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
	자연녹지지역	16,046,669	-	16,046,669	2.00	-
관리 지역	소계	263,629,903	-	263,629,903	32.78	-
	보전관리지역	173,375,598	감 57,460	173,318,138	21.56	-
	생산관리지역	8,398,672	-	8,398,672	1.04	-
	계획관리지역	81,855,633	증 57,460	81,913,093	10.18	-
농림지역		467,600,498	-	467,600,498	58.15	-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
미지정		-	-	-	-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3-17호(2023.1.19.)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460	-	57,460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7,460	감) 57,460	-	-	
	계획관리지역	-	증) 57,460	57,460	100.0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57,460	1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제2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	증)56,820	56,820		

나.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제2스포츠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56,82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체육 시설 집중화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관계 도면 : 실음생략

4.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천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위생 및 안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농촌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비 : 1,888백만원(국비 1,441, 도비 134, 군비 313)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안전 인프라 개선
 -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수탁)
6. 사업기간 : 2021. ~ 2024.
7.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940-8272)이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940-5544)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인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거창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6. 7.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위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사업
 - 명칭: 거창 지원,지청 이전부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 지원 20,271㎡, 지청 22,593㎡, 도로 3,392㎡(총 46,256㎡)
※ 붙임 세목조서 참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거창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1. 공공청사(거창지원)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합계		37필지		20,696	20,271					
1	거창읍 가지리	1345-52	전	332	332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45-55	전	10	10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61	전	72	72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40	전	79	79	거창군	-			
5	거창읍 가지리	1354-25	임	224	224	거창군	-			
6-1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6-2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66, 102동 ○호(봉덕동, 앞산힐스테이트)			
7-1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			
7-2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66, 102동 ○호(봉덕동, 앞산힐스테이트)			
8	거창읍 가지리	1354-22	임	1,137	1,137	거창군	-			
9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992	992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0	거창읍 가지리	1343-2	전	248	248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1	거창읍 가지리	1345-56	전	50	50	거창군	-			
12	거창읍 가지리	1345-3	전	351	351	거창군	-			
13	거창읍 가지리	1297-15	임	164	164	거창군	-			
14	거창읍 가지리	1343-13	전	3,055	3,055	거창군	-			
15	거창읍 가지리	1323-59	전	266	266	거창군	-			
16	거창읍 가지리	산104-1	임	1,006	600	거창군	-			
17	거창읍 가지리	1336-9	전	347	34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번길 21, 1 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 14-1	근저당권, 지상권
18-1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8-2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변○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1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9-2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변○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20	거창읍 가지리	산104-13	임	1,035	1,035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 14-1	근저당권, 지상권
21	거창읍 가지리	1343-9	전	114	114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 14-1	근저당권, 지상권
22	거창읍 가지리	1336-8	전	532	52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 14-1	근저당권, 지상권
23	거창읍 가지리	1343-3	전	344	344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4	거창읍 가지리	1343	전	565	565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 파트)			
25	거창읍 가지리	1343-8	전	238	238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 파트)			
26	거창읍 가지리	1343-10	전	1,363	1,363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2	임	595	595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8	거창읍 가지리	1342-1	과	1,022	1,022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 파트)			
29	거창읍 가지리	산102-7	임	623	623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0	거창읍 가지리	1343-11	전	268	268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가지리	산102-8	임	26	26	주식회사 ○○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 원구 용마로 142, ○호 (양덕동, 삼성버킹궁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2	거창읍 상림리	410-13	전	1,242	1,242	유○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 ○	이○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 11(서둔동)	근저당권
33	거창읍 상림리	410-16	전	1,790	1,790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34	거창읍 상림리	410-14	전	470	47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5	거창읍 상림리	753-1	도	15	15	국 (국토교통부)	-			
36	거창읍 상림리	410-9	전	50	5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7	거창읍 상림리	410-17	전	40	40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 55	근저당권, 지상권

2. 공공청사(거창지청)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8필지		22,593	22,593					
1	거창읍 가지리	1354-27	임	3	3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49	449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93	193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167	167	거창군	-			
5	거창읍 가지리	1345-57	전	32	32	거창군	-			
6	거창읍 가지리	1345-43	전	46	46	거창군	-			
7	거창읍 가지리	1345-49	전	10	10	거창군	-			
8	거창읍 가지리	1345-44	전	848	848	거창군	-			
9	거창읍 가지리	1354-26	임	21	21	거창군	-			
10	거창읍 가지리	1354-23	임	3,447	3,447	거창군	-			
11	거창읍 가지리	1354-24	임	8	8	거창군	-			
12	거창읍 가지리	1345-45	전	3,092	3,092	거창군	-			
13	거창읍 가지리	1345-58	전	60	60	거창군	-			
14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55	55	거창군	-			
15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75	75	거창군	-			
16	거창읍 가지리	1345-59	전	25	25	거창군	-			
17	거창읍 가지리	1354-17	임	85	85	거창군	-			
18	거창읍 가지리	1354-21	임	11	11	거창군	-			
19	거창읍 가지리	1345-48	전	1	1	거창군	-			
20	거창읍 가지리	1345-47	전	154	154	거창군	-			
21	거창읍 가지리	1345-46	전	153	153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2	거창읍 가지리	1345-50	전	28	28	거창군	-			
23	거창읍 가지리	1345-60	전	2	2	거창군	-			
24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23	23	거창군	-			
25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55	55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6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114	114	거창군	-			
27	거창읍 가지리	1354-29	임	55	55	거창군	-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8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169	169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하동 ○			
29-1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4-1 대아파트 ○			
29-2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30	거창읍 상림리	410-19	전	107	107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 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 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 55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상림리	410-8	전	261	261	거창군	-			
32	거창읍 상림리	410-22	전	632	632	거창군	-			
33-1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 1/4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4-1 대아파트 ○			
33-2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 1/4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33-3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 2/4	거창군	-			
34-1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4-1 대아파트 ○			
34-2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35	거창읍 상림리	412-16	전	1,250	1,250	거창군	-			
36	거창읍 상림리	산21-10	임	365	365	거창군	-			
37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미등기	-	이○○무	송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38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미등기	-	이○○무	송정리	토지대장 상 소유자
39	거창읍 상림리	산21-9	임	1,193	1,193	거창군	-			
40	거창읍 상림리	412-13	전	516	516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상동7길 46, 비 동 ○호 (영창빌라)	부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 길 6(웅양지점)	근저당권
41	거창읍 상림리	412-12	전	4	4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상동7길 46, 비 동 ○호 (영창빌라)	부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 길 6(웅양지점)	근저당권
42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거창군	-			
43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거창군	-			
44	거창읍 상림리	산25-10	임	48	48	거창군	-			
45	거창읍 상림리	산25-11	임	878	878	거창군	-			
46	거창읍 상림리	703-10	전	33	33	거창군	-			
47	거창읍 상림리	702-7	전	151	151	거창군	-			
48	거창읍 상림리	702-8	전	5	5	거창군	-			

3. 도로(중로2-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13필지		3,798	3,392					
1	거창읍 가지리	1345-62	전	3	3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245	128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54	전	72	72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53	전	73	73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			
5	거창읍 가지리	1345-51	전	591	591	거창군	-			
6	거창읍 가지리	1354-28	임	288	288	거창군	-			
7	거창읍 상림리	410-15	전	936	936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하동 ○			
8-1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4-1 현 대아파트 ○			
8-2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9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819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 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동 예농업협동 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 55	근저당권, 지상권
10	거창읍 상림리	410-10	전	15	15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11	거창읍 상림리	410-21	전	7	7	오○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상림리 ○			
12-1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 산구 반림동 4-1 현 대아파트 ○			
12-2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13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674	주식회사 ○○구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호 (양재동,서울오토갤러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153-26 등 3건
- 건물번호 변경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춘전길 266-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8(2023. 3. 9.)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6. 7.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시설: 체육시설)
 - 명 칭 : 제2스포츠타운 부지조성사업
3. 사업시행 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 회 시행면적		
체육시설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일원	56,820	56,784	경고 제2023-108호 (2023. 3. 9.)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체육시설사업소장)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도시건축과(☎055-940-3584)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33)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의견사항

-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남하면 무릉리	1361	유	22,621	20,861	국(국토교통부)
2	"	1548-1	구	753	734	국(농림수산부)
3	"	1358-3	유	1,897	1,119	국(국토교통부)
4	"	1351-3	구	19	12	국(농림수산부)
5	"	1350-1	유	14,522	13,502	국(국토교통부)
6	"	1419-1	구	26	26	김관주
7	"	1351-5	구	465	431	국(농림수산부)
8	"	1411-1	유	3,028	3,028	국(기획재정부)
9	"	1412-10	답	4	4	국(기획재정부)
10	"	산275-1	유	273	273	국(기획재정부)
11	"	산274-3	유	1,950	1,950	국(기획재정부)
12	"	1548-3	구	602	602	국(농림수산부)
13	"	1357-22	도	70	49	국(국토교통부)
14	"	1422	유	8,912	7,246	국(국토교통부)
15	"	산271-1	유	606	434	국(국토교통부)
16	"	산270	임	528	92	동래정씨종중
17	"	1363-5	전	128	38	경상남도
18	"	1388-2	구	23	23	정봉준
19	"	1389-2	구	44	44	정서영
20	"	1389-5	답	2	2	이지은
21	"	1389-1	답	118	118	거창군
22	"	1390-1	전	231	66	김원조
23	"	1390	전	5,016	4,348	김원조
24	"	산275	임	917	713	거창군
25	"	산274-1	임	331	331	이상욱
26	"	산424	구	383	335	국(농림수산부)
27	"	산424-1	구	242	242	국(기획재정부)
28	"	산273-1	유	270	161	국(기획재정부)
합 계				63,981	56,784	

주상 완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주상면 완대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주상 완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주상 완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일원
- 다.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A=4,428.2㎡)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286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사

일련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주상	완대	1286	답	3,246.3	10.3	경남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514	이 * 택
2	주상	완대	1285	답	3,397.6	302.8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	이 * 열
3	주상	완대	642-3	도	624.0	624.0	-	국(국토교통부)
4	주상	완대	639-5	도	3,631.0	2,283.0	-	국(건설부)
5	주상	완대	1284	답	3,294.0	178.7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53-2	이 * 옥
6	주상	완대	1229	구	43.0	29.3	-	국(농수산부)
7	주상	완대	650-1	도	117.0	42.6	-	국(건설부)
8	주상	완대	1200	천	75,810.0	194.6	-	국(환경부)
9	주상	완대	648-4	도	224.0	8.2	-	경상남도
10	주상	완대	642-4	도	155.0	51.5	-	국(국토해양부)
11	주상	완대	641-5	도	94.0	47.0	-	경상남도
12	주상	완대	640-3	도	13.0	2.4	고제면 농산리	전 * 문
13	주상	완대	641-3	도	3.0	3.0	연교리 596	백 * 상
14	주상	완대	640-2	도	479.0	211.9	고제면 개명리	전 * 문
15	주상	완대	1227	도	1,459.0	204.2	-	국(건설부)
16	주상	완대	산35-5	도	857.0	234.7	-	경상남도
계					93,446.9	4,428.2		

『주상 완대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제 원농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고제면 농산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고제 원농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고제 원농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 다.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A=2,235.0㎡)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340-2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2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고제	농산	224-4	도	1,927	10	-	국(건설부)
2	고제	농산	338-2	도	53	53	-	박 * 래
3	고제	농산	233-3	임	883	248	-	박*훈 외 2인
4	고제	농산	339-2	도	30	19	-	박 * 철
5	고제	농산	339-4	도	197	120	-	국(국토교통부)
6	고제	농산	1843	구	4,873	419	-	국(농림수산부)
7	고제	농산	1848	천	142,061	60	-	국(환경부)
8	고제	농산	334	도	719	181	-	국(국토교통부)
9	고제	농산	331-6	도	1,187	498	-	국(건설부)
10	고제	농산	340-2	도	327	324	-	백 * 일
11	고제	농산	340-9	도	569	200	-	국(국토교통부)
12	고제	농산	331-5	도	53	8	-	국(건설부)
13	고제	농산	332-2	도	291	95	-	박 * 록
계					153,170	2,235		

『고제 원농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거창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2023년도 거창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 직위	임용직급 (등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직 무 내 용
거창군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1.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2.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4.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5. 대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6.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에 관한 사항 7.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 임용기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2. 임용신분

- 가.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나.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 다음의 자격요건 ① ~ ⑥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되, 불가피하게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령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구 분		자 격 요 건
경 력 기 준	공무원	③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⑤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간호.보건진료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의사면허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면접시행 최종 예정일 기준

4. 보수 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시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임용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63,430천원	

※ 연봉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예정)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2023. 6. 12. ~ 6. 16.(5일간)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토·일제외))	2023.6.19.(월)	2023.6.21.(수) 거창군청	2023.6.23.(금)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평정요소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거창군 행정과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2)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나 거창군 내부의 응시자만 있을 경우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함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cm) 2매 제출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함.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5급이상 10,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 우편접수시 거창군수입증지(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기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0.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행정담당 ☎055-94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람.

거창군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생년월일	성명
임용 부서	거창군 보건소	(담당자 기재)		
분야	보건소장 개방형직위			

연번	제출 목록	제출여부
1	응시원서 ▷ [서식1]	
2	이력서 ▷ [서식2]	
3	자기소개서 ▷ [서식3]	
4	직무수행계획서 ▷ [서식4]	
5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7	자격검증 동의서 ▷ [서식5]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서식6]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서식7]	
10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명시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석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박사학위 논문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요지

※ 내용요지는 10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함

□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게재서 (출판사)	연구자	연 구 연월일	내용요지

□ 수상경력

수상일자	내용(훈격)	수여기관	수상경위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보건소장(개방형직 위)	임용 직급		성명	
2023. . . 작성자 :					(인)

[서식4]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임용 분야	보건소장(개방형직 위)	임용 직급		성명	
2023. . . 작 성 자 : (인)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작성
-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 ▶ 응시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 력 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 이상인 자 ()
	자 격 증 준 기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경 기	간 력 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 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같음한다.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으로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보건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직속기관 소장·과장 직급) ①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행복농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전부개정2021.4.28.)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2021.4.28.)

⑤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1.4.28.)

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 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호(1급)		90,875(89,356)
2호(2급)		82,617(81,236)
3호(3급)		75,108(73,852)
4호(4급)		<u>64,509(63,430)</u>
5호(5급)	85,843	48,792
6호(6급)	74,993	37,784